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13

2015. 6. 30

건축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계약제도 개선 방안 – 수의계약 방식에서 낙찰자결정 방식으로의 전환

염철호 연구위원, 임강률 연구원, 유제연 연구원

| 요약

-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미 경쟁 행위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규정에 없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 설계 우려
- ‘예산안 편성 지침’ 또한 심사비, 상금 등 설계공모 시 소요되는 경비를 설계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기관은 수의시담을 통해 삭감한 비용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자에 대한 낙찰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아닌 지방계약법의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설계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

| 정책제안

-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하여 경쟁절차를 거치는 건축 설계공모를 수의계약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하므로 국가계약법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 규정 신설
- 지방계약법의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건축 설계공모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예외규정 신설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건축 설계공모 시 소요되는 경비(심사비, 상금 등)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와 같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

1 건축 설계공모 관련 제도 현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015년도 기준 2.1억원) 이상으로 공장·군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용역 발주는 공모방식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등)**

-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등)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② · ③항 중략
-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축 설계공모방식과 관련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45호)로 운영

- 해당 지침에서는 설계공모의 종류, 시행절차, 평가, 보상, 계약체결 등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보칙으로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서도 설계공모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법 제13조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낙찰자 결정)

-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장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운영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제7장에서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규정하고 있음
 -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유사하게 설계공모의 종류, 시행절차, 평가, 보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8. 계약상대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에서 당선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디자인공모로 설계용역에 당선된 자와의 계약체결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수의계약 사유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건축 설계공모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을 따른 디자인공모에 의한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간주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중략)
 -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중략)
 4.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중략)
 - 차.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 · 자격을 요하는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 시설관리 · 교육 · 행사 · 정보이용 ·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발주기관은 당선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견적가격이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면 계약당사자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수의시담’이라 일컬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 시 과도한 수의시담의 문제점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을 수의계약 사유로 다루는 규정의 부적절성

- 계약법에서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견적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이외에는 어떠한 경쟁행위 비용이 수반되는 노력이나 비용을 요하지 않음
- 하지만 디자인(건축설계) 공모에서는 해당 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함
 - 계약상대자(당선자)가 되기 위하여 경쟁행위뿐만 아니라 공모안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외 공모안 작성에 따른 경비가 소요됨
 - 설계공모 제출물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이외에 도판, 모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비가 소요되기도 함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2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각 목의 내용

목	내용	경쟁 및 대가 행위
가	공사 관련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비경쟁, 없음
나	작업상 훈란 초래 우려 2인 이상 시공의 어려움	비경쟁, 없음
다	마감공사와 관련한 경우	비경쟁, 없음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 시행하는 공사	비경쟁, 없음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신기술 등	비경쟁, 기술개발
바	해당 물품을 제조 · 공급한 자가 물품설치 · 조립 · 정비	비경쟁, 없음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획층	비경쟁, 없음
아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	비경쟁, 저작권등록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비경쟁, 없음
차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 · 자격을 필요, 디자인공모에 당선	경쟁, 공모안 작성
카	특정인의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 · 임차 · 임대하는 경우	비경쟁, 없음

- 특히 건축 설계공모는 타 디자인공모와 다르게 당선자에게 별도의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설계권만을 부여하고 있어 수의시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모에 당선된 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함
 - 따라서 설계업체는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설계비를 삭감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데라도 공모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임
-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수행 가능한 용역비를 투찰하기 때문에 낙찰이 될 경우 투찰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나, 설계공모의 당선자는 자신이 낙찰 받게 될 설계용역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응모를 하게 됨
- 건축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와의 계약은 ‘공모’라는 경쟁과정이 전제되어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수반하며 실제 설계용역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설계 우려

- 공공건축 설계용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예정설계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 2014년 발주 공고된 설계용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 용역비의 약 27%가 삭감되어 공고(도서의 양 ‘상급’기준)되었으며, 심한 경우 56%가 삭감된 경우도 있음
 - 발주기관은 통상적으로 도서의 양을 ‘중급’으로 산정하여 설계용역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수의시담 시 예정가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낙찰가 하한율(87.745%)을 적용하거나 이전의 계약체결 사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00시의 경우, 공정이 복잡한 리모델링 용역의 설계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부서는 사업 특성상 설계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업무량을 고려하여 과도한 수의시담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는 선행사례를 근거로 결국 86%로 계약을 체결

수의시담을 통한 계약체결 사례

용역명	계약	발주기관	공고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국립00과학관 건립	08.09	0000부	29.59억	23.15억	78.23%
국립0000자원관	09.04	0000부	25.737억	20.77억	80.70%
국민0000공단	11.12	00청	52.81억	43.82억	82.99%
00문화예술회관	12.08	00도 00시	12.73억	10.65억	83.66%
00질환예방센터	13.03	00도	4억	3.35억	83.75%
00초등학교	14.06	00시00청	7.19억	6.15억	85.49%
00초등학교	14.11	00청	5.99억	5.12억	85.49%
00000원 이전청사	10.05	0000원	15,389억	13,24억	86.04%
00동 주민센터	12.12	00시 00구	2.56억	2.21억	86.68%
00회관 재건축사업	15.02	0000처	18.44억	16.01억	86.80%
00초등학교 교사동	12.04	00시교육청	5.40억	4.68억	86.80%
00보증기금 사옥	11.07	00보증기금	38.48억	33.66억	87.47%
00공항 여객터미널	11.07	00공항공사	518.0억	458.53억	88.51%

- 결과적으로 관련 대가기준에서 제시한 적정 설계비의 27% 정도가 감액되어 예정설계비가 책정되고, 또 다시 수의시담을 통해 23% 정도가 감액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가기준의 약 60%에 해당하는 설계비로 설계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실한 설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공모 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시담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안 편성지침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설계보상비 지급경비를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지침에서는 설계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국 발주기관은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감액하여 설계공모 시 소요되는 심사비와 상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관련 내용】

1. 적용대상

□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종 략)

- 주요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 ※ 건축분야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553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조)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
-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종 략)

□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요율은 본 지침의 기준단기 적용
- **설계공모시 소요되는 경비(심사비, 상금 등)는 요율에 따라 산정된 설계비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별도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1호)에서 정하는 방식 적용

- 이에 비해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행정자치부의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서는 공모 입상자에 대한 보상비를 설계비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상 상충이 발생함
 -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는 예정설계비의 10%를 입상작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지방계약법에서의 설계공모 당선자에 대한 낙찰자 규정 적용 시 한계

- 지방계약법의 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에서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예정설계비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설계공모의 경우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의 낙찰자 규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설계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를 진행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수의시담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 발생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

질의 내용	회신 내용
<p>(요약) A건축사무소는 B지자체의 건축설계 공모에 지원하며, 당선된다면 설계 공모 시 공고된 설계비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였음.(‘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1절 총칙, 2.용어의 정의: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가)</p> <p>A사의 설계안이 당선 되었고, A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조 및 동 시행령 42조4 설계 공모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을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B지자체의 계약담당자(공무원)는 관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수의계약 항목을 적용하여 수의시담을 거쳐 설계비(계약금액)를 감액한다고 결정. 이에 대한 적법한 방법을 문의</p>	<p>(상략) 다만, 지방계약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략)</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한 방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련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p> <p>계약담당자는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나-2”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3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규정 신설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국가계약법상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을 경쟁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쟁행위가 이뤄진 법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건축 설계공모방식의 경우 해당 공모에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고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쟁을 절차를 거치므로 공모방식을 통한 당선자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경쟁입찰이 성립된 낙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가계약법(현행)	국가계약법(개정안)
<p>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p> <p>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p>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p> <p>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설계공모 방식의 설계용역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법령 개정과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신설)
<p>제42조의2(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의 설계용역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p>

■ 행정자치부 ‘설계공모 운영요령’ 적용대상에 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실시한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에서 지방계약법의 낙찰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모지침을 일원화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도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나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규나 조달청 예규에 따른 관련 타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제2항에서는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적용대상에 건축설계만이 아니라 산업·공예·시각디자인 등 타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건축 설계공모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계공모 운영요령’(현행)	‘설계공모 운영요령’(개정안)
<p>제1절 통 칙</p> <p>1. 목적 및 적용대상</p> <p>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p>	<p>제1절 통 칙</p> <p>1. 목적 및 적용대상</p> <p>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p> <p>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 1호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공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고시내용을 적용한다.</p>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설계공모 보상비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책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건축 설계공모 시 소요되는 경비(심사비·상금 등)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하도록 개정할 필요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1호)에 추가하여, 건축 설계공모에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에서 정하는 방식을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필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현행)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개정안)
<p>2. 세부지침 (중 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설계공모시 소요되는 경비(심사비, 상금 등)는 요율에 따라 산정된 설계비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별도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1호)에서 정하는 방식 적용 <p>(후 락)</p>	<p>2. 세부지침 (중 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설계공모시 소요되는 경비(심사비, 상금 등)는 요율에 따라 산정된 설계비와 <u>별도로 산정하여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u> ※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1호)에서 정하는 방식 적용. 단, 건축설계공모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에서 정하는 방식 적용 <p>(후 락)</p>

염철호 연구위원 (031-478-9677, chyoum@auri.re.kr)

임강률 연구원 (031-478-9689, krlim@auri.re.kr)

유제연 연구원 (031-478-9687, jyryu@auri.re.kr)

